|  |  |  |
| --- | --- | --- |
| **금융리스화물수출퇴세정책의 유관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2016]8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재정청(국), 국가세무국, 해관(세관)총서광동분서, 각 직속해관(세관), 신강생산건설병단재무국:  조사를 거쳐, 금융리스화물수출퇴세정책 유관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재정부, 해관(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전국 금융리스화물수출퇴세정책시범 전국적 전개에 관한 통지>(재세[2014]62호) 제1조 제1항 중 “금융리스기업, 금융리스회사 및 그 설립한 프로젝트 자회사”에는 금융리스기업, 금융리스회사 및 상술한 기업 및 회사가 설립한 프로젝트 자회사가 포함된다.  2. 금융리스기업이라 함은 상무부 비준을 거쳐 설립한 외상투자 금융리스회사, 상무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공동으로 비준하여 금융업무를 시범적으로 전개하는 내자 금융리스기업 및 상무부가 권한을 부여한 성급 상무주관부처와 국가경제기술개발구 비준을 거친 금융리스회사를 가리킨다.  금융리스회사라 함은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비준하여 설립한 금융리스회사를 가리킨다.  재정부  해관(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  2016년 8월 2일 |  | **关于融资租赁货物出口退税政策有关**  **问题的通知**  财税〔2016〕87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海关总署广东分署、各直属海关，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  　　经研究，现将融资租赁货物出口退税政策有关问题通知如下：  　　一、《财政部 海关总署 国家税务总局关于在全国开展融资租赁货物出口退税政策试点的通知》（财税〔2014〕62号）第一条第一项中的“融资租赁企业、金融租赁公司及其设立的项目子公司”，包括融资租赁企业、金融租赁公司，以及上述企业、公司设立的项目子公司。  　　二、融资租赁企业，是指经商务部批准设立的外商投资融资租赁公司、经商务部和国家税务总局共同批准开展融资业务试点的内资融资租赁企业、经商务部授权的省级商务主管部门和国家经济技术开发区批准的融资租赁公司。  　　金融租赁公司，是指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批准设立的金融租赁公司。  财政部  海关总署  国家税务总局  2016年8月2日 |